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3가단1012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접수 제2845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태균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

원고는 소외 B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C”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합니다)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외 B이 소외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 이라고 합니다)으로 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가 이후 보증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아 래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변경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1차보증	2015. 3. 10.	45,000,000	2016. 3. 9. (2023. 3.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15. 3. 11.	50,000,000
2차보증	2020. 10. 6.	19,000,000	2025. 10. 8.	중소기업자금대출	2020. 10. 6.	20,000,000
3차보증	2021. 1. 5.	22,950,000	2022. 1. 4. (2023. 1. 4.)	중소기업자금대출	2021. 1. 8.	27,000,000

2. 주채무의 내용

소외 은행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대출일자에 소외 B과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각 대출과목으로 각 대출금액을, 변제기한을 각 보증기한으로 정하여 소외 B에게 대출하였다가 보증기한의 변경으로 변경보증기한을 최종 변제기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소외 B은 2022. 8. 11.부터 시작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최종 부실처리 되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2022. 11. 16.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각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85,711,581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대위변제금의 일부회수

원고는 2022. 11. 16. 위와 같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 중 소외 B으로부터 같은날 금 112,649원 및 2022. 11. 25. 금 25,717원의 합계 금 138,366원을 각 회수하여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각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금 85,573,215원(85,711,581원 - 138,366원)입니다.

다. 채권보전비용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B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소외 B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금 150,56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 (1)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B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이행일인 2022. 11. 16.부터 연 8%입니다.

(2) 확정손해금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B으로부터 위 각 보증과 관련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11. 16. 금 112,649원 및 2022. 11. 25. 금 25,717원을 각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각 회수금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22. 11. 16.부터 각 회수일까지 기간의 확정손해금을 위 (1)항의 이율에 따라 산정하면 금 80원[24원(112,649원 $\times$ 8/100 $\times$ 1/365, 원미만은 버림) + 56원(25,717원 $\times$ 8/100 $\times$ 10/365, 원미만은 버림)]입니다.

4. 사해행위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

(1) 사전구상권의 발생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B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하였고 이러한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D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및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갑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참조), 소외 B은 2022. 8. 11.부터 시작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2022. 8. 31. 폐업으로 인해 곧 부실처리 되었던 바, 그 무렵 소외 B은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위 제1항 기재의 보증금액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습

니다.

(2)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4503 판결)고 할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위 제 1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소외 B은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폐업으로 곧 최종 부실처리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은 곧 현실화되어 2022. 8.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2022. 8. 31. 최종 부실처리 되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은 비교적 명백합니다.

나. 사해행위

- (1) 이에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한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B은 자신이 경영하는 소외 회사의 매출 급감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곧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평소 어떠한 담보의 제공이 없이도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였거나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보이는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 (2) 소외 B은 소외 회사가 매출급감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에, 결국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폐업으로 최종 부실처리가 되어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 (3) 소외 B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필연적으로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결국 원고로서는 소외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소외 B의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다. 악의의 점에 관하여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매출급감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에 이미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자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는 소외 B과 평소 어떠한 담보의 제공이 없이도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였던 자이거나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긴밀한 관계에 의해 상호 통모하여 원고 등의 채권자들에 의해 피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편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종료된 시점이 소외 B의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점,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B의 악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특히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소외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원고의 구상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 및 원상회복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F건물 G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H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10.92㎡

2층 117.52㎡

3층 117.52㎡

4층 117.52㎡

5층 117.52㎡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E 대 650.5㎡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I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53.3㎡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650.4분의 40.65

